

의안번호	2207725
의 퇴 인	조경태의원
회 답 일	2025. 4. 4.
추계번호	25B0471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활동 관리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공해등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를 짐(제1항) 국가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공해등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7조(기본 시책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공해등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함 1. 공해등 해양유전자원과 디지털서열정보(이하 “해양유전자원등”이라 한다)의 확보·관리·이용 및 해양유전자원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에 관한 사항 2. 구역기반관리수단 관련 조치 준수에 관한 사항 3. 공해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개발도상국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5. 국제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해 등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3	안 제10조(전통지식의 보호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공해등 해양유전자원과 관련된 원주민 및 현지공동체가 보유한 공해등 해양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과 이용이 원주민현지공동체와의 상호합의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4	안 제12조(기탁·등록)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기탁·등록된 공해등 해양유전자원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5	안 제14조(관리 및 유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장고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해양유전자원등이 공해등에서 유래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이행을 위하여 공해등 해양유전자원등 등록·기탁을 위한 전문 수장고 설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6	안 제20조(예비평가서 작성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안 제21조(평가준비서 작성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 평가준비서에 대한 의견을 청취·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8	안 제22조(평가서 초안 작성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공해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공해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반영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사업자에게 공해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9	안 제23조(평가서 승인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공해환경영향평가서에 기초하여 활동 승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0	안 제28조(조사·연구)	국가는 공해등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조사·연구를 추진할 수 있음 1. 공해환경영향평가 2. 구역기반관리수단 3. 공해등 해양유전자원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역량강화와 해양기술이전 5. 그 밖에 공해등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필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량규정
11	안 제29조(기술개발)	국가는 공해등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1. 해양유전자원등의 조사, 확보, 보존, 배양·증식, 복원 기술 등 생명공학적 활용 기술 2. 해양생태계 서비스 측정·평가 및 증진 기술 3. 해양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요인 예측·관리 등 보호가 필요한 구역 식별을 위한 기술 4. 훼손된 해양생태계 및 서식지 복원 기술 5.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조사, 관측 평가 등 공해환경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기술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2	안 제30조(전문인력의 양성)	해양수산부장관은 공해등 해양유전자원등, 구역기반관리수단, 공해환경영향평가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음(제1항) 1. 공해등 해양유전자원등 조사, 확보, 보존, 배양·증식, 복원과 해양환경 조사, 분석 및 평가 관련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수립·시행 2. 제1호 관련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3. 제1호 관련 전문인력의 실태 조사 4. 제3호의 실태 조사의 범위,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공해등 해양유전자원등, 해양환경 조사, 분석 및 평가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3	안 제31조(교육·홍보)	국가는 국민에게 공해등 해양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한 이용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의무규정
14	안 제32조(협의회)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제1항) 1. 공해등 해양유전자원등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 2. 구역기반관리수단 제안 및 준수에 관한 사항 3. 공해환경영향평가 절차, 방법, 평가, 승인에 관한 사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5	안 제33조(전문기관의 설치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공해등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제2항) 1. 제13조에 따른 공해등 해양유전자원등의 보관, 보존, 관리 등 2. 공해등 해양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정보의 취합, 관리, 조사 및 제공 3. 구역기반관리수단과 관련조치에 관한 정보의 취합, 관리, 조사 및 제공 4. 공해환경영향평가 평가 과정에서의 의견 검토 또는 관련 보고서에 관한 정보의 취합, 관리, 조사 및 제공 5. 공해등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개발도상국 역량강화와 해양기술이전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의 취합, 관리, 조사 및 제공 6. 제7조 각 호의 사항 7. 협정 이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량규정
		국가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6	안 제35조(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관련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재량규정
17	안 제36조(재원확보)	국가는 협정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의무규정
18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하는 전문기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음.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업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Ⅲ.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조(국가의 책무)	• 미대상 – 국가가 공해 등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치 등을 하도록 책임성을 강조하는 선언적 규정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2	안 제7조(기본 시책의 수립)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안 제10조(전통지식의 보호 등)	
4	안 제12조(기탁·등록)	
5	안 제14조(관리 및 유지)	
6	안 제20조(예비평가서 작성 등)	
7	안 제21조(평가준비서 작성 등)	
8	안 제22조(평가서 초안 작성 등)	
9	안 제23조(평가서 승인 등)	
10	안 제28조(조사·연구)	
11	안 제29조(기술개발)	
12	안 제30조(전문인력의 양성)	
13	안 제31조(교육·홍보)	
14	안 제32조(협의회)	
15	안 제33조(전문기관의 설치 등)	
16	안 제35조(국고 보조)	
17	안 제36조(재원확보)	
18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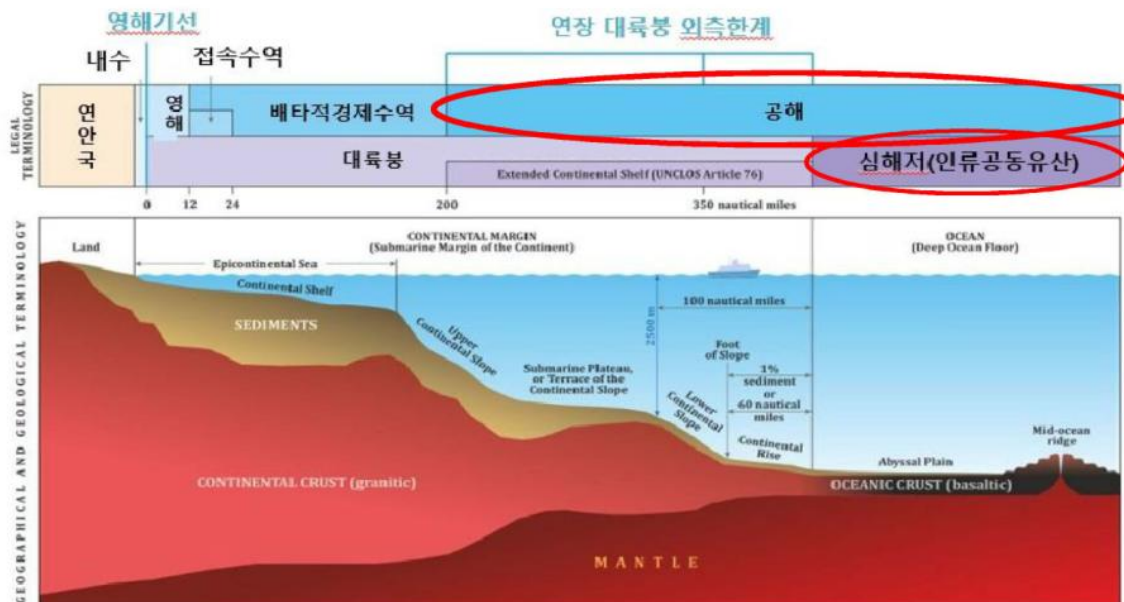
2. 상세 사유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개요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이하 “BBNJ협정”)은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이원지역)¹⁾의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규범으로서, ‘해양유전자원의 이익 공유, 구역기반관리수단 설정,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에 대한 해양환경영향평가 실시, 기타 개도국을 위한 해양기술이전 및 역량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 협정명: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Agree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 [참고자료 1] BBNJ협정 개요 참고

[그림 1]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이원지역)



자료: ‘바다를 지키는 약속, BBNJ 협정 비준 어디까지 왔나?’ 정책세미나(2024.9.) 자료집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이라 함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공해와 심해저를 말한다.

[표 1] BBNJ협정의 주요 내용

① 해양유전자원 : 공해 및 심해저에서 채집·형성한 해양유전자원과 디지털서열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공유 의무화
- 공해 및 심해저 해양유전자원 채집·활용에 대한 공평하고 공정한 이익공유를 위해 정보 공유체계 수립 및 통보 의무화, 금전적 이익공유 체계 마련 * 해양유전자원에 관한 유전자 서열 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
② 구역기반관리수단 : 공해 및 심해저에 해양보호구역 등 구역기반 관리수단을 설정하는 기준과 절차 마련
- 당사국이 이해당사자와 협의하여 공해 및 심해저에 구역기반 관리수단 설치 제안, 과학기술기구 자문을 거쳐 당사국총회에서 설치 결정
③ 공해환경영향평가 : 공해 및 심해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해양환경영향평가의 실시요건과 절차 규정
- 과학기술기구 의견 검토 등을 통해 당사국이 영향평가 실시여부 결정
④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 : 개도국을 위한 해양기술이전 및 역량강화의 지원의 조건과 형태를 규정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본 제정안은 BBNJ협정이 발효될 경우 당사국의 협정 이행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협정의 체계적인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BBNJ협정은 2025년 3월 기준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112개국이 서명, 21개국이 비준하였음
 - (서명 현황) 대한민국 포함 112개국 서명
 - (비준 현황) 대한민국, 프랑스, 스페인, 칠레 등 21개국 비준
 - (발효 요건) 60개국 비준 후 120일째 되는 날 발효
- 제정안은 BBNJ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기본 시책의 수립, 전통지식의 보호, 해양유전자원등의 기탁·등록, 관리 및 유지, 예비평가서·평가준비서·평가서 초안 작성 및 평가서 승인 시 전문가 의견 청취,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홍보, 협의회, 전문기관의 설치, 국고

보조, 재원 확보, 권한의 위임·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 시책의 수립(안 제7조)
- 원주민 및 현지공동체에 속한 해양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 등(안 제10조)
- 기탁·등록된 해양유전자원등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지원 (안 제12조)
- 수장고·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해양유전자원등이 공해등에서 유래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관리할 수 있는 시책 마련, 해양유전자원등의 등록·기탁을 위한 전문수장고 설립·운영 지원(안 제14조)
- 공해환경영향평가의 예비평가서 검토 시 전문가의 의견 청취(안 제20조)
- 공해환경영향평가의 평가준비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청취(안 제21조)
- 공해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청취(안 제22조)
- 공해환경영향평가서에 기초하여 활동 승인 시 전문가의 의견 청취(안 제23조)
-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안 제28조 및 제29조)
-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사업 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안 제30조)
- 해양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한 이용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안 제31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의 협의를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안 제32조)
-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관 설치 또는 지정·운영(안 제33조)
-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관련 단체에 대한 비용 보조(안 제35조)
- 협정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안 제36조)
- 해양수산부장관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임·위탁 및 소요경비 보조(안 제37조)

□ 그러나 본 제정안은 BBNJ협정의 체계적인 국내 이행을 위한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BBNJ협정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 BBNJ협정 본문 및 본

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현 시점에서는 협정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어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파악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들은 협정 발효 후 개최되는 당사자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으로, 당사자총회에서 협정내용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 등 세부 사항이 결정된 이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당사자총회는 협정에 가입·비준한 국가를 회원국으로 하며, 협정 발효 후 1년 이내 제1차 당사자총회가 개최될 예정임

[표 2] 당사자총회 결정이 필요한 주요 내용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지식의 보호) 해양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조치 사항 등 ○ (이익 공유) 해양유전자원등에 대한 비금전적·금전적 이익공유 방식 등 ○ (기탁·등록) 해양유전자원등 기탁·등록 규모, 방식 등 ○ (구역기반관리수단) 구역기반관리수단 제안, 설정 방법 등 ○ (공해환경영향평가) 예비평가서·평가준비서·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방법, 제출방식, 검토 방법, 보완·조정, 반려, 정보공개 방법 등 ○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 등 |
|---|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

[참고자료]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BBNJ협정)」 개요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협정명

- (국문)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 (영문) Agree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 목적 :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는 것(협정 제2조 일반 목적)

□ 적용범위 : 국가관할권 이원지역*(협정 제3조 적용 범위)

* 공해 및 심해저(협정 제1조제2호)

□ 발효요건 : 60개국 비준 후 120일째 되는 날 발효(협정 제68조)

□ 서명 및 비준 동향 : 112개국* 서명, 21개국** 비준('25.3 현재)

* 대한민국 '23. 10. 31. 83번째로 서명 / 중국, 미국,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 다수 서명

** 팔라우('24.1.22.), 칠레('24.2.20.), 벨리즈('24.4.8.), 세이셸('24.4.13.), 모나코('24.5.9.), 모리셔스('24.5.30.), 마이크로네시아연방('24.6.3.), 쿠바('24.6.28.), 몰디브('24.9.24.), 싱가포르('24.9.24.), 방글라데시('24.9.26.), 바베이도스('24.9.26.), 동티모르('24.9.26.), 파나마('24.10.23.), 세인트루시아('24.11.26.), 스페인('25.2.4.), 프랑스('25.2.5.), 말라위('25.2.27.), 앤티가바부다('25.3.12.), 마셜제도('25.3.12.), 대한민국('25.3.19.)

□ 협정 주요내용

- ① 해양유전자원 : 공해 및 심해저에서 채집·형성한 해양유전자원과 디지털서

열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공유 의무화

- 공해 및 심해저 해양유전자원 채집·활용에 대한 공평하고 공정한 이익공유를 위해 정보 공유체계 수립 및 통보 의무화, 금전적 이익공유 체계 마련

* 해양유전자원에 관한 유전자 서열 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

② 구역기반관리수단 : 공해 및 심해저에 해양보호구역 등 구역기반 관리수단을 설정하는 기준과 절차 마련

- 당사국이 이해당사자와 협의하여 공해 및 심해저에 구역기반 관리수단 설치 제안, 과학기술기구 자문을 거쳐 당사국총회에서 설치 결정

③ 공해환경영향평가 : 공해 및 심해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공해환경영향평가의 실시요건과 절차 규정

- 과학기술기구 의견 검토 등을 통해 당사국이 영향평가 실시여부 결정

④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 : 개도국을 위한 해양기술이전 및 역량강화의 지원의 조건과 형태를 규정

□ 발효 예상 시기 : 미정('26. 中 예상)

- 국제사회는 제3차 UN해양총회* 개최 시('25.6)까지 60개국 비준**을 목표로 각종 국제행사에서 비준 의지 표명

* UN해양총회 : '17년부터 UN 차원에서 3년마다 개최(193개국, UN·EU 등 10,000여명 참석)

** (발효요건) 60개국 비준 후 120일 경과 시 발효